

제주에너지공사 신입직원 공개채용 공고

제주에너지공사 신입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. 5. 23.

제주에너지공사 사장

1. 채용분야 및 인원 : 6명

구 분		직종	모집분야	채용인원
신 입	일반직 6급	기술직	발전단지 유지보수	3명
			에너지사업	1명
			정보화	1명
		연구직	에너지기술연구	1명

2. 지원자격

○ 공통 응시자격

- 성별, 학력, 전공 무관
-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60세 미만인 자
-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정상근무 가능한 자
-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○ 모집분야별 응시자격

직종	모집분야	인원	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기술직	발전단지 유지보수	3명	• [필수]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공사에서 지정한 특수자격(산업기사 이상) 소지자
	에너지사업	1명	• 관련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
	정보화	1명	• 관련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
연구직	에너지 기술연구	1명	• 신재생에너지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- 관련분야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우대

○ 공사 지정 특수 자격 : 법정필수요원(전기안전관리자) 선임에 필요한 자격증

산업기사	기사	기능장	기술사
전기 기계 전기공사	전기 기계 전기공사	전기 기계 에너지관리	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안전

※ 위 기재된 국가자격증 외의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
3. 전형절차

구분	전형방법	평가기준	선발 배수
1차	서류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입사지원서 - 교육사항, 자격사항, 경험 혹은 경력사항 등 평가 - 자기소개서 평가 	30배수 이내
2차	필기전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인성검사(적격·부적격 여부 판단) ✓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✓ 직무수행 능력 평가 	3배수 이내
3차	최종면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✓ PT면접 실시 ✓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, 태도, 능력 및 적격성 평가 	

※ 직무수행 능력 평가 과목

- 발전단지 유지보수 , 에너지사업, 에너지기술연구 : 전기일반, 회로이론, 직류·교류여자기기, 신재생에너지 상식
- 정보화(전산) : 데이터베이스, 전자계산기구조, 운영체제, 소프트웨어공학, 데이터통신

※ 각 전형 단계별 가중치는 없으며 ZERO BASE에서 평가합니다.

※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전형단계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.

4. 가점사항

【가점혜택】

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」, 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 : 전형단계별 만점의 5~10%
 -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1호내지 제2호에 의한 자 : 전형단계별 만점의 5%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자녀 : 서류 및 필기전형 만점의 5%
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 : 서류 및 필기전형 만점의 5%
 - 「다문화가정 지원법」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 및 그 가족 : 서류 및 필기전형 만점의 5%
 - 최종학교 소재지가 제주도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인 경우 이거나, 본인 또는 부모 중 1인 이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재 : 서류 및 필기전형 만점의 3%
- ※ 모든 가점은 만점의 60% 이상 득점 시 반영하며, 취업보호(지원) 대상자와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만점의 40% 이상 득점 시 가점 부여합니다.
- ※ 가점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합니다.

5. 전형일정

구 분	일 정	비 고
서류접수	5.28.(월) ~ 6.5.(화)	✓ 채용페이지(https://jejuenergy.incruit.com)에서 접수 (우편과 방문접수 등 불가)
서류합격자 발표	6.11.(월)	✓ 홈페이지 및 개별 SMS
필기전형	6.16.(토)	✓ 계획, 장소, 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
필기전형 합격자 발표	6.22.(금)	✓ 홈페이지 및 개별 SMS
면접전형	6.28.(목)	✓ 계획, 장소, 일정은 홈페이지 등에 공고
최종 합격자 발표	7.4.(수)	✓ 홈페이지 및 개별 SMS
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시 사전 통보합니다.

※ 인터넷 접수 마감일은 접속자 급증으로 입사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, 지원자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마감 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제출서류

가. 입사지원서에는 블라인드 채용 전형에 따라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 등의 기재를 금지하며, 위반 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. 합격 결정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前에 요구할 예정입니다.

7. 근무조건

가. 임용 예정일 : 2018년 7월

나. 보 수 : 우리 공사 보수규정에 따름

구 분	하한액(기본연봉)	상한액(기본연봉)
일반직 6급	21,338천원	46,762천원

- 다. 채용조건 : 결격사유가 없으면 임용. 단, 공사 규정에 따라 수습임용 후 3개월간 수습 기간을 운영함
- 라. 담당업무 : 모집부문에 따른 업무. 단,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임용할 수 있으며, 임용 후 전환 배치도 가능
- 마.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: 우리 공사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 규정에 따름

8. 기타사항

- 가.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제주에너지공사 규정에 따릅니다.
- 나.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두며,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, 합격취소, 임용 결격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추가합격자 선발은 없습니다.
- 다.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으면 원서접수일·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.
- 라. 해당 분야의 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습니다.
- 마.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내용만으로 합격자를 사정 하며, 채용 전형 중이나 후에 자료검증 및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자격과 경력증명 등이 지원서 입력내용과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, 탈락(불합격) 및 입사취소 처리되오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바.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에 이수 및 취득한 사항이어야 합니다.
- 사. 블라인드 채용전형에 따라 입사지원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 등 개인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, 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.

- 아. 자격 미비자, 증빙서 위·변조 제출,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든 당해 시험의 무효와 합격을 취소하며,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법적조치를 의뢰합니다.
- 자.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차. 접수서류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」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(단,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)
- 카. 근무지는 제주도 지역이며, 채용 후 제주도 지역에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타. 남자는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.
(현재 군 복무 중인 자는 2018.07.04. 이전 전역 예정이어야 함)
- 파. 신입직원 채용시 군복무 이외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
- 하. 채용계획은 사정 때문에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.

9. 문의처 : 제주에너지공사 채용홈페이지 Q&A / 인사교육부(☎ 064-720-7442)

※ 제주에너지공사는 인재 채용과 관련한 어떠한 인사 청탁을 일절 받지 않으며, 인사 청탁 시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제주에너지공사 인사규정 제12조(직원채용의 결격사유)

1.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5.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8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
9.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